##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정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664

발의연월일: 2024. 8. 8.

발 의 자:신정훈・박지원・조 국

신영대 · 문금주 · 염태영

이기헌 • 이상식 • 유준병

김재원 · 권칠승 · 김문수

양부남 · 문대림 의원

(14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보호자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도록하는 등 보호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현행법상 보호자가 의무 등을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은 부재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. 특히, 교권 침해 및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공동체의 회복과 학부모의 역할 재정립 등을 주문한 교권보호 4법의 개정 취지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뚜렷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음.

이에 보호자가 교육 활동에 원활히 참여하고 교육의 주체로서 보호

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시책 마련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, 보호자의 의무 등의 이행에 관한 점검 및 관련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보호자의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보호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의5제4항 및 제28조의3 신설).

## 초・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초·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5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자의 의무 등의 이행에 관한 점검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8조의3(보호자에 대한 교육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로서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교육활동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- 1. 학생교육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
- 2. 교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
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로서 필요한 교육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교육에 필

요한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·시행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시책 마련,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,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 조례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의5(보호자의 의무 등) ①	제18조의5(보호자의 의무 등) ①
~ ③ (생 략)	~ ③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
	3항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
	호자의 의무 등의 이행에 관한
	점검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
	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
	다. 이 경우 실태조사의 범위와
	<u>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</u>
	<u>령령으로 정한다.</u>
<u>&lt;신 설&gt;</u>	제28조의3(보호자에 대한 교육
	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
	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가 학생
	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
	로서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하
	고 교육활동에 원활히 참여할
	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
	하는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
	런하여야 한다.
	1. 학생교육 역량 강화를 목적
	으로 하는 교육
	2. 교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
	필요한 교육

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보호자로서 필요한 교육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보호자 에게 제1항 각 호에 대한 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 항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교육 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 원을 할 수 있다.
-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·시행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실 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시책 마련, 제 2항에 따른 교육 실시,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 조례로 정한다.